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65
----------	-------

발의연월일 : 2026. 6. 15.

발 의 자 : 이훈기 · 최민희 · 장종태
김남근 · 박지원 · 김 윤
전진숙 · 김문수 · 이해민
민병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은 주권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게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그러나 정기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한 사업보고서 제출·공시기한
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가 정기주주총회
에 임박하여 제출·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사업보고서는 회사의 사업내용, 재무상태, 임원보수, 지배구조 등 주
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음. 그럼에도 주주들
이 이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실질적인 의
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독

립이사 비율 강화, 자기주식 소각 원칙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주주권 보호 장치가 강화된 만큼, 주주총회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정보제공 절차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한을 현행 2주 전에서 6주 전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한 취지에 맞추어, 사업보고서 제출·공시기한도 정기주주총회일과 연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상법」에 따른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사업보고서를 해당 정기총회일의 6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 신설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주권상장법인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상법」 제365조에 따른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기총회일의 6주 전까지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0조제1항 후단 중 “제159조제2항(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는 제외한다)·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제159조 제3항(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는 제외한다)·제5항·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제159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총회에 관한 사업보고서 제출부
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생략) <u><신 설></u></p> <p>② ~ ⑦ (생략)</p> <p>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 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p>	<p>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u>주권상장법인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상법」 제365조에 따른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기총회일의 6주 전까지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u> ③ ~ ⑧ (현행 제2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p> <p>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① ----- ----- ----- ----- ----- ----- ----- ----- ----- ----- ----- -----</p>

